

포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6월 8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6월 8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30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6. 18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박선영 환경정책과장)

가. 개정사유

-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인 “환경교육”과 관련한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·시행에 따라 환경교육의 체계적 추진 기반과 국가 및 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.
-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 환경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환경교육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환경교육 활성화 대상 범위 확대 (안 제6조)
-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명시 (안 제11조)
- 조문 구성 정비 (안 제12조~제13조)
- 환경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환경교육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
(안 제14조~제15조)

다. 관련법령

-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-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대상을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,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추진체계 정비를 통해 환경교육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종합검토 결과

- 본 개정안은 기존 유치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함으로써 영유아기 환경교육의 보편적 기반을 마련하고,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‘환경교육센터’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음.
- 또한 환경교육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·자문할 수 있는 '환경교육위원회'의 구성 근거를 신설하여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추진체계를 보완·정비하려는 것으로, 검토 결과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